

「평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9. 12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9. 24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9. 24(월)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정보화 관련 기본 법률인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이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으로 개정·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-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(제4조)
 -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, 목표,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, 개인 정보 보호, 정보격차 해소, 재원조달 및 운용 등 정보화를 추진
- 정보화위원회 구성 운영(제6조, 제7조)
- 정보화책임관 지정(제8조)
 -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둬.
-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(제9조)
 -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주민생활, 산업, 복지, 교육,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·시행된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 수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
 -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정보화 책임관 지정, 행정·복지·산업·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 등 지역정보화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군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 - 다만, 우리군의 정보화 현황 및 수요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급변하는 정보기술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교육 확대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